

火保法上 特殊建物소유자의 손해배상범위

金 敬 中

〈保險 1 部 總括課長〉

一. 序 說

火保法上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그 建物の 火災로 因하여 他人이 死亡하거나 負傷을 當한 때에는 一定한 保險金額範圍內에서 그 火災發生에 아무런 故意나 過失이 없음에도 無過失損害賠償責任(以下 無過失責任이라 한다)을 지도록 되어 있고(§4①) 이 無過失責任의 履行을 擔保하기 爲하여 特殊建物を 損害保險會社가 營爲하는 特約付火災保險에 義務의으로 加入토록 하였음은(§5①)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 特殊建物の 構造의 特殊性(특히 共同住宅)과 立法의 不備로 特殊建物所有者의 無過失責任의 有無와 그 範圍 等に 關聯하여 複雜하고 어려운 問題가 實務上 提起되고 있다. 이번에는 特殊建物所有者의 無過失責任의 範圍에 關하여 考察코자 한다.

二. 特殊建物所有者의 無過失責任 根據

1. 過失責任主義

一般的으로 他人에게 不法行爲(unerlaubte Handlu-

ng tort)로 損害賠償責任(Schadenersatz, compensation for damage)을 負擔하려면 故意 또는 過失에 基因한 違法行爲(widerrechtliche Handlung)에 依하여 損害가 發生한 경우래야 하는바(民法 §750) 이를 過失責任主義(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라 하고, 故意 또는 過失이 없으면서도 損害賠償責任을 지게 되는 無過失責任主義(liability without fault)와 對立되는 概念이다.

過失責任主義는 個人에 對한 道義의 非難을 責任의 限界로 하는 同時에 他面에서는 過失로서 責任을 負擔치 않도록 注意하라고 警告함으로써 警告의 機能·豫防의 機能을 갖게 된다. 그것은 또 責任을 過失있는 경우에만 限定하고 不測의 責任을 지게 하는 일이 없다고 하는 점에서 企業의 採算을 可能케 하는 機能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①).

2. 無過失責任主義臺頭

19世紀부터 20世紀에 걸쳐서 科學文明이 비상하게 發達함에 따라 종래에는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危險이 隨伴하는 企業이 續出하게 되었다. 即 鐵道나 自動車等 高度의 交通手段과 厚子力, 鑛業, 化學工業 等과 같이 그 自體 危險한 設備로 된 企業이 나타나고 이러한 企業의 活動이 계속되는 한 他人에게 損害를 發生 시키는 어느 程度 必然의인레 被害者와 企業間의 均衡

① 郭潤直 著 債權各論(下) p. 287.

金曾漢 判例, 學說 註釋民法(下) p. 539.

上 企業家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그 企業으로부터 一定한 利益을 보는 企業主가 發生한 損害를 보는 것이 公平·妥當한 것이다. 即 企業家의 損害賠償責任이 過失責任主義原則下에서만 運營된다면 利用者나 從業員이 最大의 注意義務를 다 하였음에도 不拘하고 그로부터 입게 된 損害를 賠償받을 길이 없다면 被害者에게 너무 가혹하여 社會的正義에 어긋난다.

3. 特殊建物所有者的 無過失責任의 妥當性

特殊建物內의 施設은 大部分 燃燒性이 강한 各種 建築資材 또는 內裝材 等을 많이 使用하는 경우가 있어 일단 火災가 發生하였을 때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財產의 損失은 勿論 많은 人命被害가 發生하였음은 內外國의 火災發生史가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危險性과 被害를 豫想하면서 所有者에게 當該 建物의 火災發生에 故意 또는 過失이 전혀 없다고 아무런 責任을 認定치 않는다면 過失責任主義의 致命的 矛盾이 야기된다.

따라서 特殊建物所有者的 無過失責任은 危險責任의 原理에 있다고 할 수 있다. 即 火災 危險性이 많은 特殊建物を 所有하는 者는 火災防止에 充分한 注意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萬一 火災危險이 現實化하여 損害가 發生한 경우에는 그 損害賠償責任을 負擔하는 것이 社會적으로 妥當한 것이며, 그 裏面에는 特殊建物의 所有者에게 무거운 責任을 지움으로써 火災에 對한 注意를 더욱 喚起시켜 危險을 防止케 하려는 政策의 配應도 內包되어 있다. 이러한 點에서 特殊建物의 所有者에게 一定金額範圍內에서 火災로 因한 人命被害者에게 對하여 絕對的 無過失責任을 負擔시킨 것은 當然하다.

三. 特殊建物所有者的 無過失責任의 範圍

1. 因果的 範圍

(1) 火災로 因한 被害

他人의 負傷이나 死亡은 特殊建物의 火災로 因하여

야 한다(②). 「火災」라 함은 科學적으로 볼 때 空氣中の 酸素와 他元素와의 強力한 酸化作用에 依하여 發生하는 現象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發生하는 熱에 依하여 그의 酸化物 및 其他 物件을 溶解燃燒시키고 또 變質시킨다. 英美法上 火災保險에서의 火災는 이러한 物理的·化學的 現象에 있어서 ① 燃燒를 同伴하고 있을 것. ② 火災가 우연히 發生할 것의 두 가지 條件을 要求한다.

(2) 建物의 火災

「建物의 火災」에 對하여 當該建物에서 直接發生한 경우만을 지칭하는가, 隣近의 火災로부터 延燒된 경우도 包含되는가에 對하여 異論이 있으나 火保法의 立法趣旨과 特殊建物의 所有者에게 無過失責任을 認定한 點과 火災保險에서 延燒된 경우를 除外시키고 있지 않다는 點으로 보아 延燒된 경우까지 包含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妥當하다.

(3) 火災로 因하여

「火災로 因하여」라 함은 建物의 火災와 他人의 死亡이나 負傷이라는 結果間에 因果關係가 있어야 한다. 即 他人의 死亡이나 負傷이 火災라는 事實의 結果로서 發生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느 程度의 因果關係를 要하는가에 對하여 「火災가 없었더라면 死亡이나 負傷이라는 事實이 發生할 수 없을 것이라는 因果關係가 存在해야 한다」는 見解도 있으나(條件說—Bedingungstheorie) 原因과 結果의 關係에서는 無限히 存在하는 事實中 客觀적으로 先行事實에 依하여 普通 一般적으로 予測되는 後行事實이 있을 때 兩者는 因果關係(相當因果關係說—theorie der adäquaten versicherung)가 있다는 것이 通說이다(③).

2. 無過失責任의 人的範圍

(1) 他人의 概念

特殊建物의 所有者가 無過失責任을 負擔하는 人的範圍는 「他人」이다. 他人이라 함은 特殊建物의 所有者가 아닌 自然人을 말한다. 法人은 性質上 他人의 概念에 包含되지 않는다. 自然人이면 年令·性別·行爲能力

② 다만, 住宅物件火災保險普通約款의 通用對象인 特殊建物(共同住宅)은 火災 뿐만 아니라 所有者의 故意 또는 過失로 因한 爆發 또는 破烈로 人命被害를 입은 경우에도 保險금이 支給됨을 注意하여야 한다(同約款 1).

③ 郭潤直 著 債權總論 p. 172~173.

또는 意識有無 等を 不問한다.

(2) 他人의 範圍

가. 特別約款上 他人의 範圍

他人의 範圍는 被保險者·保險者 및 人命被害者에게 重大한 利害關係가 있으므로 立法上 明文이 있어야 함에도 不拘하고 火保法規에 아무런 規定이 없다. 다만, “身體損害賠償責任擔保特別約款(이하 特別約款이라 한다)”에서 他人이라 함은 「特殊建物の 所有者 및 住居를 같이 하는 直系家族(法人인 경우에는 理事 또는 業務執行機關) 以外的 사람을 말한다」라고 規定하였을 뿐이다(特別約款 2. ③). 從來에는 「他人」이라 함은 「特殊建物の 所有者 및 그와 世帶를 같이 하는 親族(民法 § 777 規定範圍) 以外的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하였던 바(舊特別約款 § 2, 3) 이를 擴大한 것이다.

이와 같이 他人의 範圍를 火保法規에서 規定치 않고 特別約款에 規定한 것은 他人의 範圍를 決定함에 있어서 보다 狀況變化에 機動性 있게 對處하여 被害者에 對한 法的保護를 하려는 趣旨이라고 풀이되나, 特殊建物の 所有者가 絶對的 無過失責任을 負擔하는 點과 火保法 § 41의 強行規定性으로 보아 他人의 範圍에 對하여는 法에서 어떠한 明文이나 委任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닐까 한다.

나. 根 據

위와 같이 他人의 範圍에서 住居를 같이 하는 直系家族을 除外시킨 理由는 첫째 特殊建物の 所有者와 그 家族間에는 經濟的利害를 같이 하고 一般的으로 扶養關係 乃至 相互協力關係에 있기 때문에 損害賠償問題가 發生하기 어렵고, 둘째 萬一 家族에게도 無過失責任을 負擔케 한다면 美風良俗에 違反되며 moral risk가 야기되기 쉬우며, 셋째 所有者와 그 家族은 하나의 共同生活體로서 特殊建物自體의 管理는 勿論 火災包險에 對한 注意를 共同으로 하여야 할 位置에 있다는 점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 住居를 같이 하는 直系家族

「住居를 같이 한다」함은 日常生計를 같이 한다는 意味로서 「世帶를 같이 한다」는 意味와 다를바 없다. 따라서 家族이라도 住居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他人의 범주에 屬한다.

「家族」이라 함은 社會的 意味의 家族과 法律上意味의 家族이 있다. 前者는 同一戶籍面에 있지 않더라도 生計를 共同으로 하는 近親을 家族이라 하는데 反하여

後者는 同一한 住宅에서 生計를 같이하는 近親이든 獨立한 生計를 營爲하는 近親이든 不問하고 同一戶籍面에 列擧되어 있는 者이면 家族이라 한다.

여기서는 法律上 意味의 家族을 말한다. 따라서 同居生活하는 父母·子女·兄弟姊妹일지라도 同一戶籍面에 있지 않은 者는 家族이 아니므로 父의 戶籍에 入籍하지 않은 私生兒는 父의 家族이 아니며 이와 反對로 妻의 前夫所生子女(加棒子)를 自己戶籍에 入籍시킨 경우에는 그 加棒子女가 別居하여도 그는 繼父와 親子 또는 親族關係가 없지만 法律上 繼父의 家族이다. 이러한 點에서 家族과 親族은 同一한 概念이 아님을 알 수 있다. 民法上 家族은 戶主의 配偶者 血族 및 그 配偶者가 되는 것이 原則이나(民法 § 779條) 戶主의 變更이 있는 경우에는 前戶主의 家族은 新戶主의 家族이 된다(同法 § 780條).

「直系」家族이라 함은 家族相互間의 關係가 上·下 垂直으로 直通하는 形態로 連結되는 家族을 지칭하며 이에는 直系尊屬家族과 直系卑屬家族이 있다. 따라서 家族이라 할지라도 여기서는 直系家族에 限하므로 配偶者 또는 兄弟姊妹 等은 包含되지 않으며 加棒子女는 直系家族이다. 結局 法律上의 家族으로 住居를 같이하는 直系家族만이 他人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特殊建物 所有者의 配偶者가 被害者인 때에는 그 配偶者에게 無過失責任을 지고 保險者는 保險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住居를 같이하는 直系家族을 他人의 範圍에서 除外시키면서 配偶者를 被害補償의 對象으로 한 것은 不合理하지 않은가 하는 疑問이 있으나, 財産에 對한 夫婦別產制(separation of goods)가 強調되고 있는 現代傾向과 特殊建物所有者의 家族集團의 被害復舊를 더욱 促進시킬 必要가 있다는 點에서 妥當한 態度라 하겠다.

라. 第3者의 被害

特殊建物所有者의 生活領域 即 生活支配領域 밖에서 發生한 火災로 因한 死亡이나 負傷當한 者에게도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無過失責任을 負擔하는가에 對하여 異論이 區區하다. 예를 들면 特殊建物の 傳賃者 또는 賃借人이 他人인 경우에 그들의 故意나 過失이 없는 狀態下에서 그 建物の 火災로 死亡이나 負傷을 當한 경우에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無過失責任을 認定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關하여 民法上 工作物所有者가 그 工作物의 取

此로 인한 損害에 對하여 無過失責任을 지는 것은(民法 §758) 적어도 不注意로 그 瑕疵를 除去하지 못한 行爲性(不作爲)이 認定되지만 위 例와 같이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그 建物を 他人에게 傳貰나 賃賃를 하고 自己는 事實的 管理를 하지 않는 狀態에서 建物の 火災로 傳貰者가 死亡이나 負傷을 當하였다 하여도 그 所有者에게 火災를 防止하는데 不注意性 다시 말하면 行爲性을 全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所有者가 無過失責任을 질 理由가 없다고 하는 見解가 있다. 적어도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無過失責任을 認定하더라도 直接占有狀態 또는 事實上支配領域內에 있는 特殊建物の 火災로 人命被害가 發生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見解에 따르면 「아파트」 등을 비롯한 特殊建物の 全部를 傳貰나 賃賃한 者는 火災로 死亡이나 負傷을 當하여도 特殊建物所有者의 無過失責任에 근거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고 保險者도 保險金을 支給할 必要가 없게 된다.

생각컨대 火保法은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그 建物 自體의 火災로 因하여 人命被害라는 結果가 發生한 때에는 그 建物を 直接占有하든 間接占有하든 不問하고 責任을 認定하려는 것이므로 特殊建物所有者의 責任을 否認하려는 것은 理解하기 困難하며 結局 火保法 §4①의 立法趣旨는 有名無實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被害者의 歸責事由로 發生한 火災로 被害를 입은 者에게는 保險者가 補償치 않는다는 特別約款의 規定上(3.Ⅱ①) 위 傳貰者 등의 歸責事由로 火災를 발생시켜 그 自身이 被害를 當한 경우 以外는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으며 保險者는 또한 所定의 保險金을 支給함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위 傳貰者나 賃賃人 自身이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火災를 야기시켜 그 配偶者나 直系家族이 人命被害를 當한 경우에도 위 例에서와 같이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이들에게 無過失責任을 負擔하지 않는다는 見解도 있으나, 이 때에도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無過失責任을 負擔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勿論 共同不法行爲가 成立된다면 別問題일 것이다.

마. 法人인 境遇

特殊建物の 所有者가 法人인 경우는 理事 또는 業務執行機關만을 他人의 範圍에서 除外시켰다. 「理事」는

法人의 執行機關이지만 理事가 아닌 執行機關도 있다. 即 理事의 特別代理人(民法 §64)은 理事는 아니지만 法人의 業務執行機關인 것이다. 다만, 法人의 監事는 執行機關이 아님을 注意하여야 한다(民法 §66, §67). 그리고 法人의 職員은 他人의 範圍에 包含되기 때문에 火災로 因하여 人命被害를 當한 때에는 그 建物の 所有者인 法人은 無過失責任을 負擔한다.

(3) 區分所有인 경우 等

共同住宅의 경우, 他人의 範圍를 어떻게 決定할 것인가는 實際 重大한 問題로 提起되고 있다. 即 같은 1棟 A號에서 火災가 發生하여 隣接한 B號의 所有者 및 그 住居를 같이 하는 直系家族이 自己집에서 死亡이나 負傷을 當한 경우, 또는 C號의 所有者 및 그 住居를 같이 하는 直系家族이 自己집에서 死亡이나 負傷을 當한 경우에 이 B와 C의 所有者 및 그 住居를 같이 하는 直系家族을 他人(被害者)의 범위에 包含시켜 補償을 해야 하는가?

생각컨대 火災가 發生한 A號의 所有者를 基準으로 할 때 B號나 C號의 所有者 또는 그 直系家族은 分明히 他人이라 할 수 있으므로 A號의 所有者는 無過失責任을 지고 保險者는 保險金의 支給責任이 있다고 하여 被害者를 두텁게 保護하려는 見解도 있으나(④) 火災는 반드시 自己所有建物에서 發火할 必要가 없다는 點과 B號 또는 C號도 區分所有로서 別個의 特殊建物이라는 點等を 감안할 때 B號 또는 C號의 所有者 등을 他人의 範圍에 包含시킨다는 것은 理解하기 어렵다. 이러한 點에서 B號 또는 C號의 所有者나 그 住居를 같이 하는 直系家族이 火災를 避하여 自己집에서 뛰어 내리다가 死亡이나 負傷을 當한 때에도 亦是 自己집에서 被害를 當한 것과 同一하게 取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이 共同住宅의 경우 嚴格히 解釋할 때에 共同住宅의 火災發生으로 因한 人命被害는 크나큰 社會問題化할 憂慮를 全혀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첫째 發火된 A號의 所有者를 基準으로 그 外 B號 또는 C號의 區分所有者는 모두 他人으로 보며, 둘째 發火된 區分所有建물이 未付保인 때라도 人命被害를 입은 區分所有建물이 付保된 以上 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셋째 一部 所有者가 未加入한 共同住宅의 共有

④ 財務部 有權解釋(保險 1223-1767, 73.12.31)

部分(에레베이터, 變電室 等)에서 人命被害가 發生할 때에는 全號數에 對한 保險加入者數의 比例로 補償할 것이 아니라 火保法規上 保險金額範圍內에서 全額補償을 받을 수 있도록 關聯法規나 約款의 時急한 政策的 補完이 있어야 할 것이다.

(4) 不法한 目的을 가진 者

特殊建物の 火災로 人命被害를 當한 者가 正當한 關係에 있는 者에 限하는가. 竊盜와 같은 不法한 目的을 갖고 들어온자도 包含되는가? 即 特殊建物の 所有者와 他人과의 關係가 法律上 또는 社會通念上 不當한 關係의 維持를 要하지 않는가 要하는가이다. 말할 것도 없이 被害者 即 他人의 범위를 擴大하여 被害者를 保護할 것인가 아니면 加害者의 責任을 制限할 것인가의 重大한 문제이다. 이는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無過失責任을 認定한 趣旨와 近代私法制度下의 權利義務關係의 基本的 法律關係 等을 고려하여 신중히 判斷할 문제이다.

생각컨대 火保法의 趣旨가 特殊建物(包險物)의 所有者에게 絕對인 注意義務를 부과하려는 即 過失責任主義原則을 깨뜨리고 無過失責任主義로, 한 걸음 더 나아가 義務保險制度로서의 責任保險制度和 같은 特殊한 制度의 發生을 야기시키고 있음은 近代私法界에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지만 그렇다고 特殊建物の 所有者와 他人과의 關係가 正當한 權利·義務關係가 存在하지 않는 경우까지 法이 保護하여 준다는 것은 無理이며 火保法이 純粹한 公法이나 私法이 아닌 兩者의 交錯되는 領域이라는 一面의 社會法的 性質도 띠고 있다는 點과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無過失責任을 認定하고 있다는 理由만으로는 當事者가 意圖하는 效果가 法的 힘에 依하여 保護되고 實現되게 되는 權利義務關係로서의 法律關係를 排除할 수 없는 것이므로 他人과의 關係는 法律上 또는 社會通念上 正當한 關係의 維持가 要求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⑤).

3. 無過失責任의 物的範圍

「第 8 條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額範圍안에서」라 함은 特殊建物の 所有者가 無過失責任을 負擔하는 物的範圍를 定한 것이다. 원래 不法行爲에 있어 無過失責任은 被害者保護를 爲한 例外的 現象이므로 이러한 例外的

責任을 廣範圍하게 認定한다면 被害者의 救濟는 強化될는지 모르나 加害者인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損害賠償에 過重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加害者와 被害者間의 利害調整이 必要한 것이고 그 調和點을 法定한 것이다. 따라서 特殊建物所有者의 無過失責任範圍는 被害者가 死亡한 때에는 50萬원, 負傷한 때에는 死亡者에 對한 保險金額의 範圍內에서 別表에 定하는 金額이다(§ 8, 施行令 § 5).

이와 같은 特殊建物所有者의 無過失責任의 範圍가 과연 被害者를 充分히 保護할 수 있는가에 對해 非現實的이라는 問題點이 指摘되고 있다.

注意를 要하는 것은 特殊建物の 所有者가 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한 경우에만 火災로 死亡이나 負傷當한 被害者에게 無過失責任을 負擔하는 것처럼 誤解하기 쉬우나, 特約付火災保險에 加入하지 않은 때에도 被害者는 損害保險會社에 保險金을 請求할 수 없을 뿐, 加害者인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火保法 § 8에 規定한 保險金額의 범위내에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4. 損害賠償責任擴張與否

火保法 § 4①에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不拘하고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한 것은 解釋上 問題가 있다.

原來 過失責任主義下에서는 火災 等 어떠한 不法行爲로 因하여 他人에게 損害賠償責任을 지려면 故意 또는 過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不法行爲中 火災에 對해서까지 過失이 있다 하여 人命의 被害나 財産上 損失에 對한 責任을 져야 한다는 것은 損害賠償이 巨額化할 가능성이 있어 失火者에게 너무 苛酷할 뿐만 아니라 가량 損害賠償責任을 지운다 하더라도 有資力한 失火者에게는 賠償을 받을 수 있지만 無資力한 失火者는 賠償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어 事實上 損害賠償을 아니 하게 되는 不公平한 結果가 생긴다는 점에서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은 失火者가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이 있을 때에 限하여 被害者에게 責任을 지도록 民法에 對한 特例를 認定하였다.

그러나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根本趣旨는 오늘날 그 妥當性에 對해 批判이 加해지고 있다. 即 現在 建物構造가 相當히 改善되어 木造에서 耐火性이 強한

⑤ 財務部企劃管理室發行, 法令解釋集 p. 86~87.

「시멘트」化되고 있어 延燒로 인한 大火災는 현저히 減少되고 있는 점, 一般國民의 權利思想의 發達로 不法行爲에 對한 責任免除은 被害者나 加害者로서나 거의 想像할 수 없으며, 不法行爲制度自體가 過去와 같이 加害者의 責任問題라는 觀點을 떠나 被害者保護라는 社會政策的인 觀點이 더욱 強調되어 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最近 責任保險制度(義務的責任保險制度)의 發達로 失火責任을 失火者에게 負擔시킨다 하여도 負擔面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점과 現實적으로 被害者에 對하여 事實上 慰勞金程度的 損害賠償을 하는 例가 많다는 점에서 그 妥當性에 의문을 提起하는 傾向이 있다.

아무튼 火保法은 失火責任에 關하여 特例를 規定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 規定의 意味에 對하여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一定한 保險金額範圍內에서 無過失責任을 認定하는 以外 別途 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被害者에게 責任을 지도록 規定한 것이 아닌가 하는 見解도 있으나,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無過失責任을 負擔하는 故로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不拘하고 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는 表現은 無意味한 것이라 하겠다. 民法에 對한 特別法인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과 다른 措置를 하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火保法 §4④ 本文에 「…負傷한 때에는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不拘하고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規定하는 것이 오히려 解釋上 混亂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四. 附加保險인 境遇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特約付火災保險에 附加하여 風災·水災 또는 倒壞 등으로 인한 「損害」를 擔保하는 保險에 加入할 수 있는데 (§5②) 이때에도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身體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 附加保險의 加入이 가능하나와 가능하다면 이 때에도 無過失責任을 지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損害」라는 語意는 保險上 「財物損失」만을 意味하므로 身體傷害 等の 경우는 包含되지 않아 附加保險의 加入이 不可하다는 見解가 있으나, 「損害」라는 語意를

財物損失에 局限시킬 理由가 없으며, 火保法 §4④에서도 「…過失이 없는 경우에도 §8의 規定에 依한 保險金額範圍內에서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고 規定한 점과 住宅物件의 爆發·破裂로 他人이 死亡이나 負傷당한 경우도 包含되는 點으로 보아(住宅物件火災保險普通約款에 添附된 身體損害賠償責任擔保特別約款 1.) 身體損害賠償責任을 擔保하는 附加保險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면 이 때에도 特殊建物の 所有者는 火災의 경우처럼 無過失責任을 지는가에 對해서 異論이 있을는지 모르나, 民事上 無過失責任은 明文이나 特約없이 解釋論으로서는 불가하며, 위 住宅物件火災保險普通約款에 添附된 身體損害賠償責任擔保特別約款 2. 用語定義에서 「…賠償 責任 및 爆發 또는 破裂로 인한 民法上의 損害賠償責任을 말합니다」라고 規定한 점으로 보아 風災·水災 또는 倒壞 등으로 因하여 他人이 死亡이나 負傷당한 경우에는 特殊建物の 所有者에게 故意 또는 過失이 있는 경우에만 損害賠償責任이 발생하고 保險者도 이 경우에 限해서 保險金支給責任을 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五. 工作物瑕疵責任과의 關係

民法 §758과 關聯하여 工作物瑕疵로 火災가 發生한 경우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이 適用되어 故意 또는 重過失이 있어야만 責任을 지게 되는가 아니면 그 適用이 排除되어 民法 §758에 依한 責任을 지는가에 對하여 民法學者들間에 論議가 되고 있다(⑥)

생각컨대 特殊建物の 瑕疵로 火災가 發生한 경우에는 火保法의 特別法性으로 보아 當然히 一定한 保險金額範圍內에서 그 所有者는 火保法上의 無過失責任을 負擔하게 되므로 以上の 論議는 큰 意味가 없으며, 다만 殘餘損害에 對해서만 問題가 될 것이다. 이때에는 그 火災가 工作物에서 直接 發生한 것이라면 亦是 工作物瑕疵로 인한 責任을 所有者에게 묻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失火責任에 關한 法律의 妥當性에 對하여 疑問이 提起되는 오늘날 더욱 그러하다. (끝)

⑥ 郭潤直 著 債權各論(下) p. 389.
金曾漢 著 前掲書 p. 584~585.